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1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문금주·신영대·주철현

김영배·박 정·김주영

복기왕 • 권칠승 • 강준현

박지원 · 정을호 · 서삼석

위성곤 • 이광희 • 민형배

이용선 • 박희승 • 안태준

이재강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6월 6일 현충일,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. 뿐만 아니라,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.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.

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 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 요가 있음.

이에,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,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

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,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8조의2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8조의2(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) 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, 휘장 및 그 문양(이하 "상징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상징물을 제작 · 유포하는 행위
 - 2.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(착용, 휴대, 전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행위
 - 3.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(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)이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외부 또는 공용공간에서 사용 (착용, 전시,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행위
 - 4.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외부에서 사용(착용, 전시,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행위
 - ② 상징물을 교육, 학술, 보도,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

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8조의2(군국주의 상징물 사
	용 금지 등) ① 군국주의를 상
	징하는 깃발, 휘장 및 그 문양
	(이하 "상징물"이라 한다)에 대
	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
	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	1. 상징물을 제작・유포하는 행
	<u>위</u>
	2.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, 공
	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
	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
	사용(착용, 휴대, 전시 등 상
	<u> 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</u>
	<u>한다)하는 행위</u>
	3.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(임대
	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)이
	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
	록 공공주택의 외부 또는 공
	용공간에서 사용(착용, 전시,
	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
	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행위
	4.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
	주자가 상징물을 타인이 볼
	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외부에

서 사용(착용, 전시,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 함한다)하는 행위

- ② 상징물을 교육, 학술, 보도,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.
- ③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는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.